

보도 시점 2026. 4. 28.(화) 12:00 배포 2026. 4. 28.(화) 10:00

새로운 국제조세질서의 시작, 글로벌최저한세 6.30.까지 신고하세요

- 올해 5월 1일(금)부터 2024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정기신고 시작
- 2,547개 다국적기업그룹, 10,188개 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

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첫 신고, 올해 5월 시작

-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.
 -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·납부를 해야 한다.
 - *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·납부 의무 있음
 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2,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,188개 국내구성기업*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.
 - * (국내구성기업)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국내 소재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
-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에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, 프랑스, 일본, 독일,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.
 - * ('24년) 38개국, ('25년) 19개국, ('26년) 6개국, (적용시기 미정) 7개국
 -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며,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.
 - *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2개월 동안 신고기간 운영

□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%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. **참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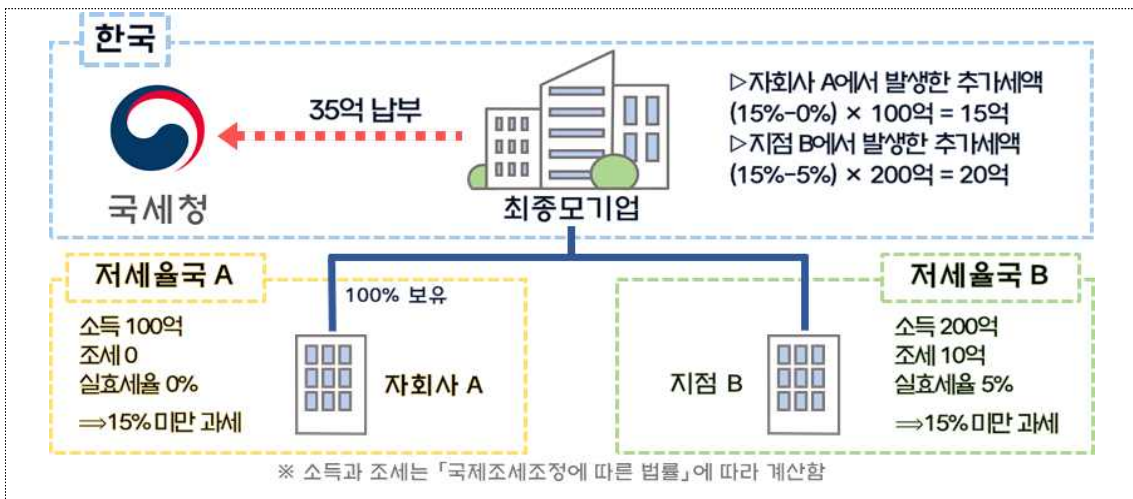
-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(15%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.

<글로벌최저한세 과세규칙(적용순서: ①→②→③)>

- ① 적격소재국추가세(QDMTT): 저율과세되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해당 기업 소재지국에서 부과
- ② 소득산입규칙(IIR): 저세율 자회사의 추가세액을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모기업에 부과
- ③ 소득산입보완규칙(UTPR): ①, ②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하는 그룹 내 기업들에 부과

-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,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%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·납부해야 한다.

┃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과세 예시 ┃



2 연결매출액 7억5천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 대상

□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.

-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~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.

-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다.
- 또한,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- 다만, 정부기업, 국제기구, 비영리기구,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

3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제출해야

-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로 구성되어 있다. [참고2](#)

■ 신고서 유형 및 제출의무

신고서 유형		제출의무
정보신고서	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	▶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. 예외(아래 ①,②)가 있음
	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	▶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으나 아래 ②의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발생함
세액신고서	추가세액신고서	▶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해야 함

-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·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*를 제출해야 한다.

*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3·54호 서식

<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예외>

① 지정국내기업이 그룹을 대표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

→ 다른 국내구성기업은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
② 그룹의 국외구성기업이 외국*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

* 단,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국가여야 함

→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 다만,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*는 국내에 제출해야 한다.

*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5호 서식

□ **추가세액배분액**을 우리나라에 **납부할 의무**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신고·납부 기한까지 **추가세액신고서***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**납부**해야 한다. **참고3**

*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6호 서식

□ **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**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**전자신고만** 가능하며, **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**와 **추가세액신고서**는 **서면제출도** 가능하다.

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방법(국조칙 별지 제53·54호 서식)
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
- 홈택스에서 전자파일(XML)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

┃ 홈택스 접근경로 ┃

증명·등록·신청 ⇒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·신고 ⇒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

■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제출 방법 (국조칙 별지 제55호 서식)

-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
- 전자신고 시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

┃ 홈택스 접근경로 ┃

증명·등록·신청 ⇒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·신고 ⇒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신고

■ 추가세액신고서(소득산입규칙) 제출 방법 (국조칙 별지 제56호 서식)

-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
-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파일(VSAM)을 제출하거나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

┃ 홈택스 접근경로 ┃

세금신고 ⇒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⇒ 추가세액신고서(소득산입규칙) 신고

□ **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** 또는 **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**를 기한 내에 **미제출**하거나 **거짓의 자료**를 제출하는 경우 **1억원의 과태료**가 부과된다.

*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 요구 미이행 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가능

○ 다만, **전환기 사업연도***에 해당하는 **2024년 사업연도**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법령상 **면제 요건**을 충족한 경우에는 **과태료가 면제**된다. **참고4**

*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초기에 해당하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사업연도

○ 또한, **가산세**의 경우에도 **2024년 사업연도**분에 대해서는 **무신고가산세**와 **과소신고가산세**는 적용되지 않고, **납부지연가산세**는 **50% 감경**된다.

4 기업이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-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~4월 사전신고 기간 운영에 이어 신고도움자료,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. **참고5**
 -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(2020~2023년 제출분)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. **참고6**
 - 또한,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**참고7**
 -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, 리플릿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을 배포하고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. **참고8**
- 아울러,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*를 개최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.

* 간담회 시간 및 장소: 5.8. 오후 2시, 서울지방국세청

▣ 주요 신고유의사항 ▣

- 사업연도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일한 사업연도를 사용해야 함
-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별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, 특정 유형의 기업(소수지분구성기업, 공동기업, 투자구성기업 등)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함
-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작성 시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폐업한 기업도 포함해야 함
-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능통화로 작성되어야 하는 반면, 추가세액신고서는 원화로 작성되어야 함

-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제 조세관리관실	책임자	과 장	김태형 (044-204-2831)
	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	담당자	사무관	권석원 (044-204-2837)
<협조>	정보화관리관실	책임자	과 장	이용선 (044-204-2551)
	홈택스2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김은진 (044-204-2562)

□ 글로벌최저한세 제도

- (개요) 소재지국별로 계산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%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
→ 어느 국가에 소재하든 최소 15% 실효세율 과세 확보
- (도입배경) 디지털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 경쟁 방지 목적으로 '21.10월 전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
- (국내입법) '22.12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도입되어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- (신고납부기한)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*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'26.6.30. 중 늦은 날까지 신고·납부
* 사업연도 종료일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

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

- (적용대상)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.5억 유로 이상인 ①다국적기업그룹의 ②구성기업
 - ① (다국적기업그룹) 최종모기업 소재국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기업이나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 그룹
 - ② (구성기업) 최종모기업을 비롯하여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
- (제외기업) ①정부기업 ②국제기구 ③비영리기구 ④연금펀드 ⑤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와 ⑥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
* 다만, 적용대상 여부 매출액 판정 시에는 제외기업의 매출액도 포함하여 계산

□ 글로벌최저한세 (추가세액) 계산

- (계산방식)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기본단위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하는 국가 → 국가별 실효세율·추가세액 계산
* 공동기업이나 소수지분구성기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국가에 소재한 다른 구성기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실효세율·추가세액 계산

- (추가세액)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되는 세액으로,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

Ⅰ 국가별 추가세액 계산식 Ⅰ

$$\text{추가세액 (Top-up Tax)} = \text{15\%-실효세율} \text{ ①} \times \text{초과이익} \text{ ②} + \text{당기추가세액가산액} \text{ ③} - \text{적격소재국추가세액} \text{ ④}$$

- ① (실효세율) 국가별 조정대상조세* 합계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** 합계액(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)으로 나누어 산출

*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

** 회계상 순손익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

- ② (초과이익)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의 합계액에서 인건비와 유형자산의 일정비율을 합한 금액(실질기반제외소득)을 차감하여 계산

- ③ (당기추가세액가산액)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재계산* 등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세액을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가산

* 신고 후 대상조세의 감소 등 발생 시 실효세율·추가세액 재계산 필요

- ④ (적격소재국추가세액)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국 내 구성기업에 부과하는 최저한세로,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 시 차감

*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상 내국추가세('26년부터 시행)가 적격소재국추가세에 해당

□ 추가세액의 과세 방법

- (적용순서) ①소득산입규칙 → ②소득산입보완규칙의 순서로 추가세액 배분

*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산입규칙은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, 소득산입보완규칙은 '25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- (소득산입규칙)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그 소재지국에 추가세액을 납부하되, 상위 모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적용*

*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 적용을 받지 않으면 다음 중간모기업에 추가세액 과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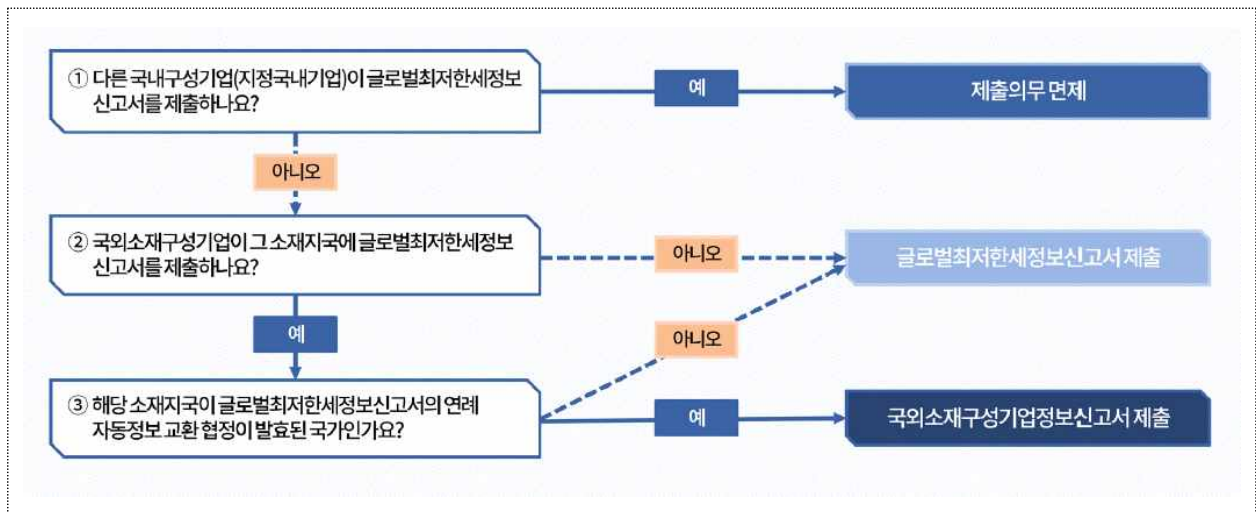
- (소득산입보완규칙) 해당 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각자의 소재지국에 추가세액을 납부

참고 2

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및 제출의무

- (정보신고서)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(국조칙 별지 제53·54호) 또는 국외소재 구성기업정보신고서(국조칙 별지 제55호)
 -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, ①다른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또는 ②국외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*에 제출하는 경우 국내 제출의무 면제
 - *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한정
 - 단, ②의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
 -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, 과태료 1억원 부과
 - *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 요구 미이행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가능

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판단 방법



- (세액신고서)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추가세액 신고서(국조칙 별지 제56호)를 제출해야 함

신고서 유형 및 신고할 내용

신고서 유형		신고할 내용
정보신고서	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	▶ 다국적기업그룹의 일반정보, 국가별 적용면제 및 제외 관련 정보,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관련 정보
	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	▶ 다른 국가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 관련 정보
세액신고서	추가세액신고서	▶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 및 계산 내역

참고 3

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납부 방법

□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방법

구 분	주 요 내 용
홈택스 (PC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서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(국조칙 별지 제53·54호 서식) - ②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(국조칙 별지 제55호 서식) - ③ 추가세액신고서 (국조칙 별지 제56호 서식) ○ 접근방법 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§. 접근경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, ②: 로그인 → 증명·등록·신청 →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·신고 ③: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§. 이용시간 : 5. 1. ~ 6. 30. 매일 06:00 ~ 24:00
우편·방문 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시간: 5. 1. ~ 6. 30. 09:00 ~ 18:00 (공휴일 제외) ※ 단,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홈택스(PC)를 통해서만 제출가능

□ 글로벌최저한세 납부 방법

구 분	주 요 내 용
홈택스 (PC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세청 홈택스 납부(공동·금융인증서 접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⇒ ‘납부·고지·환급’ → ‘세금납부’ → ‘납부할 세액 조회납부’ -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⇒ ‘납부·고지·환급’ → ‘세금납부’ → ‘자진납부’ ○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*는 사업자가 부담 * 신용카드 0.7%, 체크카드 0.4% ○ 납부시간: 07:00 ~ 23:30(연중 무휴)
금융결제원 (인터넷지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(www.giro.or.kr) ○ 납부시간: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* 매일 (00:30~23:30, 국세자진납부 시 07:00~23:30)
금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납창구, CD/ATM, 인터넷뱅킹, ARS, 공과금수납기* *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○ 납부시간: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
세무서 (무인수납 창구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인수납창구* *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

□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§87 ①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§144 ③

○ 전환기 사업연도에 다음의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관련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

①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국조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

② 다음의 ‘가’ ~ ‘마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가.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

나.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조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라.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

참고 5

신고안내 자료 게시 경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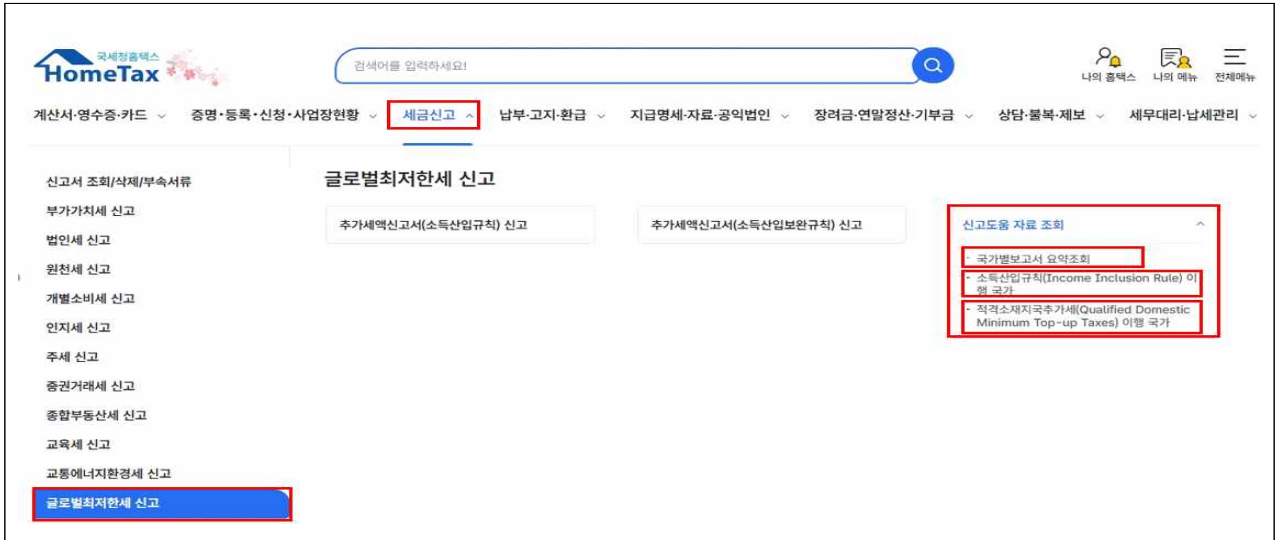
구 분	관 련 자 료 명	게 시 경 로
신 고 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 책자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*>자료실>안내 자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 리플릿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>자료실>안내 자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항목별 체크리스트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>자료실>안내 자료
신 고 서 식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신고서식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>자료실>주요 신고서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(영문)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>자료실>주요 신고서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OECD 공개자료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>자료실>OECD 공개자료
신 고 방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글로벌최저한세 홈택스 전자신고 매뉴얼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>전자신고안내>참고자료 §.홈택스>전체메뉴>기타>고객센터>자료실>번호1229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글로벌최저한세 전자신고 안내동영상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>전자신고안내>동영상자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문 신고안내 동영상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>전자신고안내>동영상자료
파 일 변 환 제 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글로벌최저한세 XML 작성지침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>전자신고안내>참고자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자신고를 위한 한국형 표준 GIR XSD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>전자신고안내>참고자료 §.홈택스>전체메뉴>기타>고객센터>자료실>번호1212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추가세액신고서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	§.글로벌최저한세 포털>전자신고안내>참고자료 §.홈택스>전체메뉴>기타>고객센터>자료실>번호1228

* 접근경로: 국세청 홈페이지 > 바로가기(화면우측) > 글로벌최저한세 포털(nts.go.kr/gmt/main.do)

참고 6

신고도움자료 조회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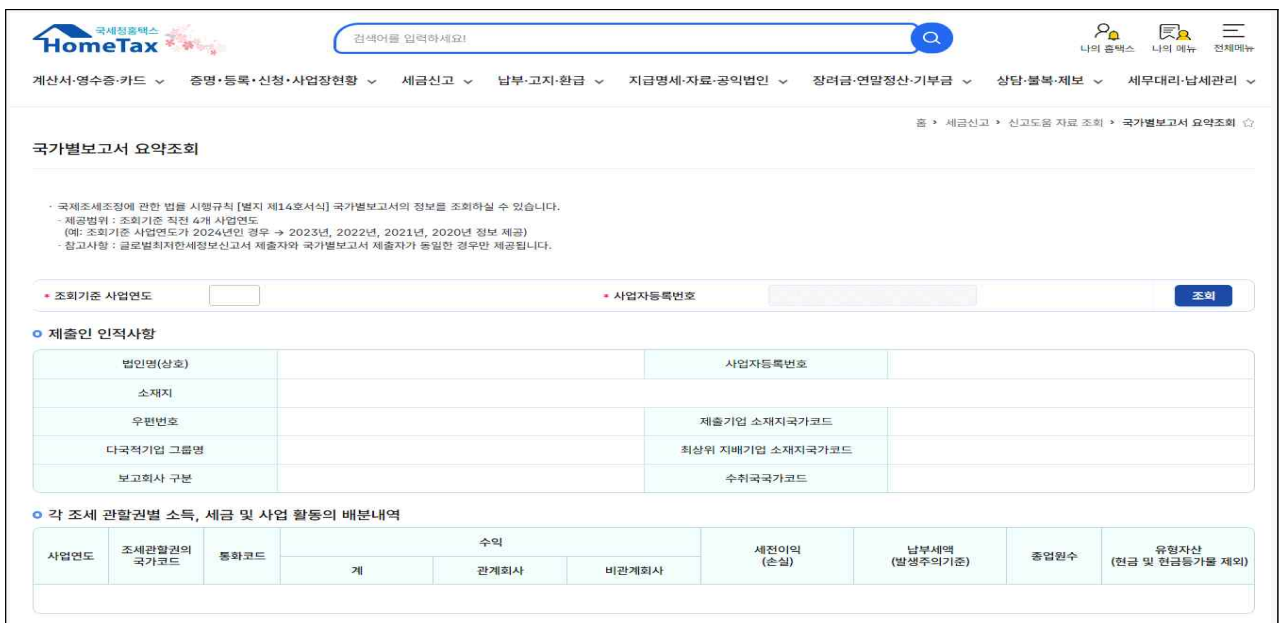
■ [조회경로] : 홈택스 로그인 > 세금신고 >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> 신고도움자료 조회



신고도움자료 항목

- ① (국가별보고서 요약조회) '20년~'23년 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의 신고내용 중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에 참고할 수 있는 항목들을 요약하여 제공
- ② (소득산입규칙 이행국가 현황) OECD 공개자료 및 각국의 공식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현행화된 소득산입규칙 이행국가 현황 제공
- ③ (적격소재국추가세 이행국가 현황) OECD 공개자료 및 각국의 공식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연도별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이행국가 현황 제공

신고도움자료(국가별보고서) 조회 화면(예시)



□ [1.2] 다국적기업그룹 일반정보 [제53호 서식 부표2 제53쪽 중 제1쪽]

1. 그룹의 구성 및 사업연도 확인

- [] 최종모기업 식별: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,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최상위 지배기업을 확인하였는가?
- [] 사업연도 기준 설정: 개별기업의 사업연도가 아닌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간을 기준으로 한 사업연도인가?
- [] 그룹 범위: 규모가 작거나 매각 예정이라는 이유로 회계상 연결에서 제외되었으나 최종모기업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을 그룹 범위에 포함하였는가?

2. 연결매출액 산정 방식 (기본 원칙)

- [] 매출액 총액: 소수지분(비지배지분)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연결재무제표상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는가?
- [] 제외기업 매출 합산: 정부기업, 비영리기구 등 '제외기업' 자체는 납세의무가 없으나, 그룹 전체 매출액 판정 시에는 제외기업의 매출도 합산하였는가?

3. 7억 5천만 유로 기준 충족 여부

- [] 4개년도 테스트: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최소 2개 사업연도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가?
- [] 통화 환산: 보고통화가 유로(EUR)가 아닌 경우, 유럽중앙은행(ECB)이 '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'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하여 정확히 환산하였는가?

<앞면>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?

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은 납부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다른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거나 국외구성기업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*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. *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국가에 제출하는 경우로서, 우리나라에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

Q2 최종모기업 소재국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신고의무가 있나요?

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제도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의무와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
Q3 국외구성기업이 해당 소재국에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A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 중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단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Q4 국내구성기업이 다수인 경우 하나의 국내구성기업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?

A 같은 그룹에 속하는 하나의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다른 국내구성기업은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.

Q5 전환기 적용면제 선택 시 국가별로 다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나요?

A 전환기 적용면제는 국가별로 3가지 요건(소액·초과이익·간이실용세율) 중 해당되는 요건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

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관련 문의

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
☎ TEL (044) 204-2837 ~ 2841
✉ E-mail pillar2@nts.go.kr

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
☎ TEL (02) 2114-2964 / 2965 / 2968

충북지방국세청 법인세과
☎ TEL (031) 888-4953 ~ 4957

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
☎ TEL (032) 718-6484 / 6485

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
☎ TEL (042) 615-2473 / 2475

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
☎ TEL (062) 236-7475 / 7476

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
☎ TEL (053) 661-7474 / 7476

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
☎ TEL (051) 750-7436 / 7440

2026.5.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



글로벌최저한세 포털



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임을 한번에



2026
글로벌최저한세
신고안내



www.nts.go.kr
National Tax Service

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소개

글로벌최저한세란?

- ✧ (개요) 국가별로 계산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%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
- ✧ (도입배경)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되었습니다.
- ✧ (국내도입)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입법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.
- ✧ (신고·납부기한) 2024년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(국조법 §62)

- ✧ (적용범위)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됩니다.
 - (연결매출액)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특별수익·비경상수익 등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 - (다국적기업그룹)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그룹을 말합니다.
 - (구성기업) 최종모기업을 비롯하여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정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.
- ✧ (제외기업) 정부기업, 국제기구, 비영리기구, 연금펀드,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·부동산투자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<뒷면>

글로벌최저한세 계산 방법

글로벌최저한세 계산 단위

-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한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.

실효세율 계산 방법 (국조법 §69)

- (실효세율) 국가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 소득·결손의 합계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.

$$\text{실효세율} = \frac{\text{조정대상조세 합계액}}{\text{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 합계액}}$$

- (조정대상조세)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(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) 회계상 순손익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.

추가세액 계산 방법 (국조법 §70)

- (추가세액)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되는 세액을 말하며,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.

$$\text{추가세액 (Top-up Tax)} = 15\% \cdot \text{실효세율} \times \left(\begin{matrix} \text{초과 이익} \\ \text{①} + \text{당기추가세액가산액} \\ \text{②} - \text{적격소재국추가세액} \\ \text{③} \end{matrix} \right)$$

- (초과이익)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의 합계액에서 인건비의 일정비율과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- (당기추가세액가산액)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재계산에 따라 발생하여 당기에 가산되는 추가세액을 의미합니다.
- (적격소재국추가세액)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국 내 구성기업에 부과하는 최저한세로,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 시 이를 차감합니다.

추가세액 과세 방법

추가세액 과세방식

- 앞에서 계산한 국가별 추가세액은 소득납입규칙과 소득납입보완규칙에 따라 과세됩니다.

과세방식 적용순서 (국조법 §70, §72, §73)

- 1 소득납입규칙(IIR)
- 2 소득납입보완규칙(UTPR)

저율과세기업의 모회사나 모회사 소재국에 납부 그룹 내 기업들이 각자의 소재국에 납부

- 국가별로 계산된 추가세액은 ① 소득납입규칙 → ② 소득납입보완규칙의 순서로 과세됩니다.

- 1 (소득납입규칙)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소득납입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, 저율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납부합니다. 이때 상위 모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적용*됩니다. * 최종모기업이 소득납입규칙 적용을 받지 않으면, 추가세액은 다음 중간모기업에 과세됩니다.

- 2 (소득납입보완규칙) 소득납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한 기업이 추가세액을 납부합니다.

적용사례 (소득납입규칙)

기업구조	소득납입규칙(IIR)	적용 방법
A기업 자본 100%	A국 최종모기업 A기업 5납부	1 기업 C의 추가세액 산출 (15%-10%) x 100 = 5
B기업 자본 100%	B국 중간모기업 B기업 5납부	2-1 A국이 소득납입규칙을 도입한 경우 → A기업이 5만큼 A국에 납부
C기업	C국 저율과세기업 추가세액 5 C국 실효세율 10% 초과이익 100 C기업 2납부	2-2 A국은 소득납입규칙을 미도입하고 B국은 도입한 경우 → B기업이 5만큼 B국에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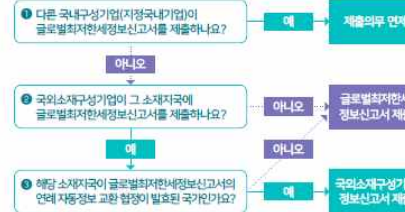
신고·납부 의무

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

(국조법 별지 제53-54호 서식)

- (제출의무자)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
- (제출기한) 2024년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
- (제출의무 예외)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

- 1 같은 그룹의 다른 국내구성기업(자정국내기업)이 대신 제출
- 2 같은 그룹의 해외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제출 단 ②의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출기한 내에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(국조법 별지 제55호 서식)를 우리나라에 제출해야 합니다.



- (과태료)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시 1억원 과태료 부과 (제출이나 시정 요구 미이행 시 최대 2억원 추가 부과), 단 전반기 사업연도*에는 국조령 §144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* 2024년 ~ 2027년 사업연도

추가세액배분액 신고·납부의무

- (신고·납부의무자)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있는 국내구성기업
- (신고서) 국조법 별지 제56호 서식 추가세액신고서
- (신고·납부기한)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동일
- (가산세)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. 단, 전반기사업연도에는 무신고·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% 감경하여 적용

신고서 제출 방법 및 전자납부 방법

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방법

(국조법 별지 제53-54호 서식)
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
- 홈택스에서 전자파일(XML)을 제출하거나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

홈택스 접근경로

증명·등록·신청 →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·신고 →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

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제출 방법

(국조법 별지 제55호 서식)
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
- 전자신고 시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

홈택스 접근경로

증명·등록·신청 →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·신고 →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신고

추가세액신고서(소득납입규칙) 제출 방법

(국조법 별지 제56호 서식)
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
-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파일(VSAM)을 제출하거나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

홈택스 접근경로

세금신고 →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→ 추가세액신고서 (소득납입규칙) 신고

전자납부

(이용시간 07:00~23:30)(단 신용카드 납부는 00:30~23:30)

- 홈택스 : 홈택스 로그인 → 납부·고지·환급 → 납부 → 자진납부
- 계좌이체 : 납부서상 전자납부번호(국세계좌)로 계좌이체 (인터넷은행, 증권사 계좌 사용 불가)
- 신용카드 납부 : 카드로 택스(www.cardrotax.kr) → 국제 → 조화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결제방법(신용카드)

Q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?

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('24년)의 직전 4개 사업연도('20~'23년)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.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입니다.
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하여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.

(관련 법령) 국조법 §61, §62

Q 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?

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(국조칙 별지 제53·54호)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.

- ① 같은 그룹에 속하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는 경우
- ② 같은 그룹에 속하는 국외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*에 제출하는 경우로서, 국내구성기업은 국세청에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(국조칙 별지 제55호)를 제출하는 경우

*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국가에 한정

또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추가세액 신고서(국조칙 별지 제56호)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
(관련 법령) 국조법 §83, §84

Q 3 국내구성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구성기업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?

A 지정국내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정 국내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개별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.

(관련 법령) 국조법 §83

Q 4

국외구성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?

A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① (발효 ○) 국내구성기업은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(국조칙 별지 제55호)를 제출하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면제

※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도 지정국내기업이 다른 기업을 대신하여 제출 가능

② (발효 ×)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

(관련 법령) 국조법 §83, 국조령 §141

Q 5

우리나라에는 지점만 있는 경우에도 국내 신고의무가 있는지?

A 고정사업장도 구성기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점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

(관련 법령) 국조법 §61①3호, 9호

Q 6

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신고의무가 있는지?

A 국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제도 도입 여부에 관계 없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의무와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·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
(관련 법령) 국조법 §61, §62, §83, §84

Q 7

최종모기업이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지?

A '24년 귀속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·납부기한은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6월 30일 중 더 늦은 날입니다.

(관련 법령) 국조법 §61①3호, 9호